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92
----------	-------

발의연월일 : 2026. 6. 2.

발 의 자 : 양부남 · 박지원 · 정진욱
장종태 · 조계원 · 정준호
김현정 · 복기왕 · 이개호
박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하위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 시도 사무 이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이 요구됨.

이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4항 신설)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나.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안 제28조제2항 및 제30조)

1)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법령뿐 아니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으로도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2)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위반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입법자율성을 확대함.

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187조의2 등)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

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의 위원 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 그리고 전문가 5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의 민간 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관련 범죄 등에 관한 공무원의제 규정을 신설함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사.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안 제199조제4항·제5항, 제199조의2, 제199조의3 및 제210조)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할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는 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변경 시 이관된 사무를 환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예산 의결기한을 합리화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하위 법령”을 “하위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도”를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2.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제41조제1항 중 “2분의 1”을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제4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7명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7조제2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9조제4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이”를 “이양 또는 위임(이하“이관”이라 한다)이”로, “위임을”을 “이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임”을 “이관”으로 한다.

제199조의2 및 제1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시·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

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00조 후단 중 “위임”을 “이관”으로 한다.

제202조제2항 후단 중 “위임”을 “이관”으로 한다.

제205조제3항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제209조제2항 본문 중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0조 단서 중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를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6장 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를 “제6장 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제3항 및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 ⑬ (생략) <u><신설></u>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 ⑬ (현행과 같음) <u>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⑮ -----제14항----- ----- ----- -----.
제28조(조례) ① (생략)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u>하위법령</u> 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8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하위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u> -----.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1.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2.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

-----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 3. (생략)

⑥·⑦ (생략)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③ (생략)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생략)

<신설>

-----.

⑤ -----

-----8명-----

---.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과반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u>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u> 2.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u> 3. <u>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u> 4. <u>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u> 5. <u>협약의 변경 및 종료</u> 6. <u>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생략)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생략) 2. <u>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u>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4명</u> ----- -----.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u>

<u>원장이 지명하는 사람</u>	<u>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u> <u>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u> <u>람 4명</u>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u>4명</u>	3. ----- ----- ----- ---- <u>5명</u>
④ (생 략) <u><신 설></u>	④ (현행과 같음) <u>제187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u> <u>원 의제) 제166조에 따른 지방</u> <u>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u> <u>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u> <u>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u> <u>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u> <u>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u> <u>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u> <u>으로 본다.</u>
제199조(설치) ① ~ ③ (생 략)	제199조(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 기 <u>위하여</u>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u>위임</u> 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u>위임</u>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u>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u> <u>에 따라</u> ----- ----- <u>이양 또는 위임(이하</u> <u>“이관”이라 한다)이</u> ----- ----- <u>이관</u> <u>을</u>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

⑤ -----
-----이관-----

-----.

⑥ (현행과 같음)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시·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 설>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

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
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
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
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
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제202조(규약 등) ① (생략)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
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
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00조(설치 권고 등) -----

-----.

-----이관-----

-----.

제202조(규약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이관-----

-----.

③ (현행과 같음)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209조(해산) ① (생략)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제209조(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다. <단서 삭제>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0조 제1
항 제2호, 제41조,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6장 제4절 및 제5절, 제142조
제2항 -----

